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. 4. 17.

제안자 : ○○○ 위원의

1. 수정이유

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감리업 관련사무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나, 상위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여 주민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법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“전기설계·감리업”을
⇒ “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감리업”으로 수정
(별표2의 제2호 나목 (11), (12))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2의 제2호 나목 (11), (12) 중 “전기설계·감리업”을
전력시설물의 설계·공사감리업” 으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□ 조례명 : 충청북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

| 개 정 안 | | | 수 정 안 | | | | | |
|---|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증명등수수료요율표 | | | 재증명등수수료요율표 | | | | | |
| (단위 : 원) | | | (단위 : 원) | | | | | |
| 구 분 | 기준 | 요액 | 구 분 | 기준 | 요액 | | | |
| 2. 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 시설탁인 등 가. (현행과 같음) | | | 2. 인가,허가,신고,신청,등록 시설탁인 등 가. (개정안과 같음) | | | | | |
| 나. ----- | | | 나. ----- | | | | | |
| (1) ~ (10) (현행과 같음) | | | (1) ~ (10) (개정안과 같음) | | | | | |
| (11) <u>전기설계·감리업</u> (등록·양도·양수·합병)신청 등 | | | (11) <u>전력시설탁인의 설계·공사감리업</u> (등록·양도·양수·합병)신청 등 | | | | | |
| ㉔ 종합 설계업 등록 신청 | 1건 | 50,000 | 개 정 안 과 같 음 | 개 정 안 과 같 음 | 개 정 안 과 같 음 | | | |
| ㉕ 종합설계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 | 1건 | 45,000 | | | | | | |
| ㉖ 전문1종 설계업 등록 신청 | 1건 | 30,000 | | | | | | |
| ㉗ 전문1종 설계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 | 1건 | 25,000 | | | | | | |
| ㉘ 전문2종 설계업 등록 신청 | 1건 | 20,000 | | | | | | |
| ㉙ 전문2종 설계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 | 1건 | 15,000 | | | | | | |
| ㉚ 종합 감리업 등록 신청 | 1건 | 50,000 | | | | | | |
| ㉛ 종합감리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 | 1건 | 45,000 | | | | | | |
| ㉜ 전문 감리업 등록 신청 | 1건 | 30,000 | | | | | | |
| ㉝ 전문감리업 양도·양수 또는 합병신고 | 1건 | 25,000 | | | | | | |
| (12) <u>전기설계·감리업</u> 변경등록 신고 | | | | | | (12) <u>전력시설탁인의 설계·공사감리업</u> 변경등록 신고 | | |
| ㉞ 변경등록(상호·소재지·대표자·기술인력)신고 | 1건 | 5,000 | | | | ㉞, ㉟ (개정안과 같음) | 개 정 안 과 같 음 | 개 정 안 과 같 음 |
| ㉟ 등록증 재발급 신청 | 1건 | 5,000 | | | | | | |